

함께 만드는
완전히 새로운 경남



경상남도

www.gyeongnam.go.kr

공보

제2509호 2021. 7. 22.(목)

제2021-1217호	2021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(도 홈페이지 공고)	
제2021-1218호	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(G2B 게시)	
제2021-1219호	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(G2B 게시)	
제2021-1220호	종합건설업 행정처분 변경공고(도 홈페이지 공고)	
제2021-1221호	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	141
제2021-1222호	제한경쟁 입찰공고(G2B 게시)	
제2021-1223호	2021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계획 공고(도 홈페이지 공고)	
제2021-1224호	「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변경(안)」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	142
제2021-1225호	매장문화재 공고	145
제2021-1226호	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(G2B 게시)	
제2021-1227호	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(G2B 게시)	
제2021-1229호	2021년도 소방공무원(소방장·교)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 (도 홈페이지 공고)	

알 림

창원시 고시 제2021-181호	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[태양광 및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]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	146
창원시 고시 제2021-182호	창원도시계획시설(청안2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	148
창원시 고시 제2021-186호	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[에코시스템(주) 폐기물처리시설(매립시설) 부지조성사업] 실시계획 승인 고시	150
창원시 고시 제2021-188호	창원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 시설(도로:소로1-53호선)사업 실시계획 고시	154
진주시 고시 제2021-154호	진주도시관리계획(신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	159
진주시 고시 제2021-156호	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정비 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	185

● **진주시 고시 제2021-156호**

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정비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진주시고시 제2016-97호(2016.03.31)로 변경고시된 진주시 망경동 130-1번지 일원의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정비계획(변경)결정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<http://www.eum.go.kr>에서 열람가능)

2021년 7월 22일

진 주 시 장

1. 정비구역(변경) 및 정비계획(변경)

1. 정비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

-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

2. 정비구역 결정(변경)

-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정비사업의 명칭	위 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	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0-1번지 일원	152,250	증) 77	152,327	최초결정일 경고 제2006-91호 (2006.03.30.)

-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정비사업의 명칭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	정비구역 면적 변경 기정) 152,250㎡ → 변경) 152,327㎡ (증 77㎡)	지적 공부상 면적정정 및 누락필지 면적 반영에 따른 정비 구역 면적 변경

3.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 계	152,250	증) 77	152,327	100.0		
주민자력개발용지	125,119	감) 9,543	115,576	75.9		
소 계	27,131	증) 9,620	36,751	24.1		
정비 기반 · 도시 계획 시설	도 로	20,241	증) 4,339	24,580	16.1	12개 노선
	공 원	1,050	감) 324	726	0.5	6개소
	주차장	3,232	감) 1,938	1,294	0.8	5개소
	공공공지	1,704	감) 1,158	546	0.4	1개소
	공동이용시설	904	증) 1,381	2,285	1.5	5개소
	문화시설 (다목적문화센터)	-	증) 7,320	7,320	4.8	1개소

4. 용도지역·지구 결정 (변경)

○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52,250	증) 77	152,327	100.0

○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면적 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10	망경제2호 경관지구	특화경관지구	망경동 일원	261,510 【35,473】	경고 제26호 (‘05.02.03.)	
18	칠암제2호 경관지구	일반시가지경관지구	칠암동, 주약동 일원	1,350,230 【116,854】	경고 제26호 (‘05.02.03.)	

※ 【 】 는 지구내 해당사항임

5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(변경)

가. 도로

○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남강1	1	10	국지 도로	259	중로 1-46	중로 1-3	일반 도로	-	건고제5호 (‘68.8.5)	노선연장 축소 및 기점변경
변경	소로	남강1	1	10	국지 도로	195	중로 2-49	중로 1-3	일반 도로	-	건고제5호 (‘68.8.5)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남강1	2	10	국지 도로	510	대로 3-1	대로 3-1	일반 도로	-	진고제5호 (‘68.8.5)	
기정	소로	남강2	1	8~9	국지 도로	245	중로 1-3	중로 1-46	일반 도로	-	00.12.04	
기정	소로	남강2	2	8	국지 도로	448	대로 3-1	소로 남강1-1	일반 도로	-	경고제215호 (‘82.09.11)	노선연장 축소 및 기종점변경
변경	소로	남강2	2	8	국지 도로	295 (204)	소로 남강1-2	중로 1-154	일반 도로	-	경고제215호 (‘82.09.11)	
폐지	소로	남강2	3	8	국지 도로	144	중로 1-46	소로 남강3-2	일반 도로	-	00.12.09	
기정	소로	남강2	4	8	국지 도로	666 (262)	대로 3-1	중로 1-46	일반 도로	-	00.12.09	
신설	소로	남강2	49	8	국지 도로	120	중로 1-154	소로 남강1-1	일반 도로	-		
기정	소로	남강3	2	6	국지 도로	660	중로 1-18	소로 남강2-5	일반 도로	-	경고제215호 (‘82.09.11)	
기정	소로	남강3	3	6	국지 도로	175	중로 1-3	중로 1-46	일반 도로	-	경고제215호 (‘82.09.11)	
기정	소로	남강3	4	6~7.5	국지 도로	350 (223)	소로 남강2-6	중로 1-46	일반 도로	-	경고제215호 (‘82.09.11)	
기정	소로	남강3	5	6	국지 도로	107	중로 1-3	소로 남강3-2	일반 도로	-	진고제5호 (‘68.8.5)	
기정	중로	1	154	20	국지 도로	297	중로 1-3	소로 남강2-15	일반 도로	-	진고제114호 (2018.10.04.)	노선연장 증가 및 기종점변경
변경	중로	1	154	20	국지 도로	558 (261)	중로 1-46	중로 1-157	일반 도로	-	진고제114호 (2018.10.04.)	
신설	중로	2	163	18	국지 도로	64	중로 1-46	소로 남강1-1	일반 도로	-		

※ ()는 지구내 편입연장임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남강1-1	소로 남강1-1	도로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기정) 연장: 259m, 기점: 중로1-46 변경) 연장: 195m, 기점: 중로2-가	신설되는 문화시설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중로(2-163)신설에 따른 노선 변경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남강2-2	소로 남강2-2	도로연장 축소 및 기종점 변경 기정) 연장: 345m(지구내) 기점: 대로3-1, 종점: 소로남강1-1 변경) 연장: 204m(지구내) 기점: 소로남강1-2, 종점: 중로1-154	중점부지 문화시설 신설에 따른 노선 변경 (기점은 대로3-1이 아닌 소로남강1-2에 연결되어있어 기입정정)
소로 남강2-3	-	도로노선 폐지	정비계획 변경(중로1-154호선 연장)에 따른 노선 폐지
-	소로 남강2-49	도로노선 신설 폭원: 8m, 연장: 120m	신설되는 문화시설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노선 신설
중로 1-154	중로 1-154	도로연장 증가 기정) 연장: -m(지구내) 변경) 연장: 261m(지구내)	도로연장을 통해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노선변경
-	중로 2-163	도로노선 신설 폭원: 18m, 연장: 64m	신설되는 문화시설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노선 신설

나. 주차장

○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의 세 분	위 치	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3,232	감)1,938	1,294		
기정	1	주차장	망경동 141-1번지 일원	망경동 141-1번지 일원	337	-	337	경고 제2010-687호	
폐지	2	주차장	망경동 13-11번지 일원	-	540	감) 540	-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3	주차장	망경동 13-15번지 일원	망경동 13-14번지	345	-	345	경고 제2010-687호	
폐지	4	주차장	망경동 31-14번지 일원	-	913	감) 913	-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5	주차장	망경동 124-10번지 일원	망경동 124-10번지 일원	570	감) 29	541	경고 제2010-687호	
폐지	71	주차장	망경동 31-3번지 일원	-	456	증) 456	-	경고 제2016-97호	
변경	72	주차장	망경동 139-5번지 일원	망경동 139-5번지	71	-	71	경고 제2016-97호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2	주차장	폐지 -위치 : 망경동 13-11번지 일원 -면적 : 540㎡	시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로 인한 주차장 폐지
3	주차장	대표지번 변경 기정) 망경동 13-15번지 일원 변경) 망경동 13-14번지	지적 합병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
4	주차장	폐지 -위 치 : 망경동 31-14번지 일원 -면적 : 913㎡	대상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(중로1-154)의 연장으로 주차장 폐지
5	주차장	면적 변경 -위치 : 망경동 124-10번지 일원 -면적 : 기정) 570㎡, 변경) 541㎡(감 29㎡)	주차장 시설 내 편입토지 면적오차정정으로 인한 주차장 면적 감소
71	주차장	폐지 -위치 : 망경동 31-3번지 일원 -면적 : 456㎡	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핵심거점 시설인 JAR어울림센터로 활성화계획 고시된 위치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 폐지
72	주차장	대표지번 변경 기정) 망경동 139-5번지 일원 변경) 망경동 139-5번지	지적 합병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

다. 공원

○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의 세 분	위 치	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1,050	감) 324	726		
변경	13	소공원	망경동 134-9번지 일원	망경동 134-9번지 일원	205	-	205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14	소공원	망경동 140-23번지 일원	망경동 140-23번지 일원	81	-	81	경고 제2010-687호	
폐지	다	소공원	망경동 20-6번지 일원	-	166	감) 166	-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15	소공원	망경동 97-1번지	망경동 97-1번지	129	-	129	경고 제2010-687호	
폐지	마	소공원	망경동 35-18번지	-	158	감) 158	-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16	소공원	망경동 29-11번지	망경동 29-11번지	145	-	145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17	소공원	강남동 108-26번지	강남동 108-26번지	116	-	116	경고 제2010-687호	
기정	18	소공원	망경동 138-1번지 일원	망경동 138-1번지 일원	50	-	50	경고 제2016-97호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3,14 15,16,17	소공원	시설번호 부여 기정) 가, 나, 라, 바, 사 변경) 13, 14, 15, 16, 17	당초 고시시 시설번호 미부여되어있어 금회 시설번호 부여
다	소공원	폐지 -위치 : 망경동 20-6번지 일원 -면적 : 166㎡	지역주민의 화합 및 교류의 장인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인한 소공원 폐지
마	소공원	폐지 -위치 : 망경동 35-18번지 -면적 : 158㎡	지역주민의 화합 및 교류의 장인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인한 소공원 폐지

라. 공공공지

○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의 세 분	위 치	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1,704	감) 1,158	546		
폐지	11	공공공지	망경동 146-36번지 일원	-	201	감) 201	-	경고 제2010-687호	
폐지	41	공공공지	망경동 29-24번지 일원	-	957	감) 957	-	경고 제2010-687호	
변경	71	공공공지	망경동 104번지 일원	강남동 104번지 일원	546	-	546	경고 제2010-687호	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1	공공공지	폐지 -위치 : 망경동 146-36번지 일원 -면적 : 201㎡	지역주민의 화합 및 교류의 장인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
41	공공공지	폐지 -위치 : 망경동 29-24번지 일원 -면적 : 957㎡	JAR어울림센터로 활성화계획 고시된 위치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 토지이용현황 반영하여 폐지
71	공공공지	주소(법정동) 정정 기정) 망경동 104번지 일원 변경) 강남동 104번지 일원	주소(법정동) 오류 정정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마. 문화시설

○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-	증) 7,320	7,320		
신설	9	문화시설	진주시 망경동 17-15번지 일원	-	증) 7,320	7,320	-	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9	문화시설	문화시설(다목적문화센터) 신설 -위치 : 망경동 17-15번지 일원 -면적 : 7,320m ²	시민의 쉽터이자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 향상기여를 위한 문화시설 신설

6. 정비기반시설(공동이용시설) 설치계획 (변경)

○ 설치계획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			904	증) 511	2,285	
변경	㉠	공동이용시설	망경동 20-56번지 일원	망경동 20-13번지 일원	904	감) 14	890	
신설	㉡	공동이용시설	-	망경동 20-6번지 일원	-	증) 166	166	
신설	㉢	공동이용시설	-	망경동 35-18번지	-	증) 158	158	
신설	㉣	공동이용시설	-	망경동 146-36번지 일원	-	증) 201	201	
신설	㉤	공동이용시설	-	망경동 33-2번지 일원	-	증) 870	870	

○ 설치계획 변경사유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㉠	공동이용 시설	면적 및 대표지번 변경 기정) 면적 : 904m ² 대표지번: 망경동 20-56번지 일원 변경) 면적 : 890m ² (감 14m ²) 대표지번: 망경동 20-13번지 일원	지적 합병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및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㉔	공동이용 시설	신설 -위치 : 망경동 20-6번지 일원 -면적 : 166㎡	지역주민의 화합 및 교류의 장 조성
㉕	공동이용 시설	신설 -위치 : 망경동 35-18번지 -면적 : 158㎡	지역주민의 화합 및 교류의 장 조성
㉖	공동이용 시설	신설 -위치 : 망경동 146-36번지 일원 -면적 : 201㎡	지역주민의 화합 및 교류의 장 조성
㉗	공동이용 시설	신설 -위치 : 망경동 33-2번지 일원 -면적 : 870㎡	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핵심거점시설인 JAR 어울림센터로 활성화계획 고시된 위치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신설

7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(변경)

○ 기정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II	가구 A, E, F, G (제2종수변경관지구)	용도	허용	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도(별표4)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내 허용용도(단, 불허용도 제외)
			불허	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(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)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제2종수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III	가구 HR (시가지경관지구)	용도	허용	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도(별표4) 중 시가지경관지구내 허용용도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IV	가구 B, C, D (제2종수변 경관지구, 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도(별표4)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, 시가지경관지구 각각 해당지구내의 허용용도(단,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불허용도 제외)
			불허	제2종수변경관지구내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(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)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제2종수변경관지구) 33m 이하(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P	주차장 (도시계획 시설)	용도	허용	노외주차장
			불허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
		건폐율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% 이하	
		용적률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% 이하	
높이	5층 이하			
Q	공동이용 시설	용도	허용	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불허용도 제외) 노유자시설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)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제5호라목)
			불허	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·안마시술소·안마원·육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시가지경관지구)	

○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II	가구 A,F,G (특화 경관지구)	용도	허용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5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4 중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
			불허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5조에 따름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특화경관지구)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II	가구 A,F,G (특화 경관지구)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 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III	가구 H,S (일반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5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4 중 일반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
			불허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6조에 따름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일반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 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IV	가구 B,C,D (특화 경관지구, 일반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5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4 중 특화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※ 각 해당되는 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
			불허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5조·제36조에 따름 ※ 각 해당되는 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특화경관지구) 33m 이하(일반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 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P	주차장 (도시계획 시설)	용도	허용	노외주차장
			불허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
		건폐율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% 이하	
		용적률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% 이하	
높이	5층 이하			
Q	공동이용 시설	용도	허용	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불허용도 제외) 노유자시설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)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제5호라목)
			불허	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·안마시술소·안마원·육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Q	공동이용 시설	건폐율	60% 이하
		용적률	230% 이하
		높이	33m 이하(일반시가지경관지구)

8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9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10.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(변경없음)

11.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(변경)

가. 정비사업 시행방법(변경)

- 지정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
 - 제7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
- 변경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
 -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·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

※ 변경사유 :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

나. 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- 정비기반시설용지 : 진주시장
- 주민자력개발용지 : 토지등소유자

다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(변경)

- 지정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위 치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비고
	명칭	면적(m ²)		계	존치	개수	철거	
기정	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	152,250	망경동 134-9번지 일원	2	-	-	2	공원㉓
			망경동 140-23번지 일원	-	-	-	-	공원㉔
			망경동 20-6번지 일원	2	-	-	2	공원㉕
			망경동 97-1번지	1	-	-	1	공원㉖
			망경동 35-18번지	1	-	-	1	공원㉗
			망경동 29-11번지	1	-	-	1	공원㉘
			강남동 108-26번지	1	-	-	1	공원㉙
			망경동 141-1번지 일원	1	-	-	1	주차장㉚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위 치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비고
	명칭	면적(m ²)		계	존치	개수	철거	
			망경동 13-11번지 일원	3	-	-	3	주차장㉔
			망경동 13-15번지 일원	2	-	-	2	주차장㉕
			망경동 31-14번지 일원	6	-	-	6	주차장㉖
			망경동 124-10번지 일원	7	-	-	7	주차장㉗
			망경동 146-36번지 일원	1	-	-	1	공공공지㉘
			망경동 29-24번지 일원	5	-	-	5	공공공지㉙
			강남동 104번지 일원	4	-	-	4	공공공지㉚
			망경동 20-56번지 일원	6	-	-	6	공동이용시설㉛
			소 계	43	-	-	43	정비기반시설
			망경동 22-1번지 일원	756	94	662	-	주민자력개발
			합 계	799	94	662	43	무허가 제외

○ 변경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위 치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비고
	명칭	면적(m ²)		계	존치	개수	철거	
변경	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	152,327	망경동 134-9번지 일원	-	-	-	-	공원㉜
			망경동 140-23번지 일원	-	-	-	-	공원㉝
			망경동 97-1번지	-	-	-	-	공원㉞
			망경동 29-11번지	-	-	-	-	공원㉟
			강남동 108-26번지	-	-	-	-	공원㊱
			망경동 138-1번지 일원	-	-	-	-	공원㊲
			망경동 141-1번지 일원	-	-	-	-	주차장㊳
			망경동 13-14번지	-	-	-	-	주차장㊴
			망경동 124-10번지 일원	-	-	-	-	주차장㊵
			망경동 33-4번지 일원	-	-	-	-	주차장㊶
			망경동 139-5번지	-	-	-	-	주차장㊷
			강남동 104번지 일원	-	-	-	-	공공공지㊸
			망경동 20-13번지 일원	-	-	-	-	공동이용시설㉠
			망경동 20-6번지 일원	-	-	-	-	공동이용시설㉡
			망경동 35-18번지	-	-	-	-	공동이용시설㉢
			망경동 146-36번지 일원	-	-	-	-	공동이용시설㉣
			망경동 33-2번지 일원	-	-	-	-	공동이용시설㉤
			-	23	-	-	23	도로
			소 계	23	-	-	23	정비기반시설
			망경동 17-15번지 일원	54	-	-	54	문화시설㉥
망경동 22-1번지 일원	667	667	-	-	주민자력개발			
합 계	744	667	-	77	무허가 제외			

라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)

-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

마.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바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) :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 참조

사.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(변경없음)

아.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(변경없음)

자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차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) :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에 따름

카.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1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-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강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	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0-1번지 일원	152,250	증) 77	152,327	경고 제2006-91호 (2006.03.30.)

-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강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	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기정) 152,250㎡ → 변경) 152,327㎡(증 77㎡)	지적 공부상 면적정정 및 누락필지 면적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

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)

-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구분명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52,250	증) 77	152,327	100.0	

-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10	망경제2호 경관지구	특화경관지구	망경동 일원	261,510 【35,473】	경고 제26호 (‘05.02.03.)	
18	칠암제2호 경관지구	일반시가지경관지구	칠암동, 주약동 일원	1,350,230 【116,854】	경고 제26호 (‘05.02.03.)	

※ 【 】 는 지구내 해당사항임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다.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)

○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

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가 구				비고
위 치		면 적(m ²)		
기정	변경	기정	변경	
A	A	6,036	6,036	
B	B	6,330	6,330	
C	C	6,408	6,379	
D	D	9,070	9,070	
E	E	5,858	7,320	
F	F	4,710	4,710	
G	G	4,233	4,233	
H	H	11,717	8,277	
I	I	9,356	9,356	
J	J	8,052	8,052	
K	K	7,007	7,007	
L	L	6,187	6,187	
M	M	5,332	5,332	
N	N	20,694	7,145	
O	O	4,973	4,973	
P	P	3,258	3,258	
Q	Q	5,766	5,766	
R	R	7,022	7,022	
-	S	-	11,294	
합 계		132,009	127,747	기반시설용지 면적 포함(도로제외)

마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(변경)

○ 기정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	가구 A, E F, G (제2종수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도(별표4)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내 허 용용도(단, 불허용도 제외)
			불허	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(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)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II	가구 A, E F, G (제2중수변 경관지구)	높이	20m 이하(제2중수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 제외)	
III	가구 H·R (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도(별표4) 중 시가지경관지구내 허용용도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 제외)	
IV	가구 B, C, D (제2중수변 경관지구, 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도(별표4) 중 제2중수변경관지구, 시가지경관지구 각각 해당지구내의 허용용도(단, 제2중수변경관지구내 불허용도 제외)
			불허	제2중수변경관지구내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(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)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제2중수변경관지구) 33m 이하(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 제외)	
P	주차장 (도시계획 시설)	용도	허용	노외주차장
			불허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
		건폐율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% 이하	
		용적률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% 이하	
		높이	5층 이하	
Q	공동이용 시설	용도	허용	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불허용도 제외) 노유자시설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)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제5호라목)
			불허	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·안마시술소·안마원·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시가지경관지구)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○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II	가구 A,F,G (특화 경관지구)	용도	허용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5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4 중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
			불허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5조에 따름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특화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 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III	가구 H'S (일반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5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4 중 일반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
			불허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6조에 따름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일반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 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IV	가구 B,C,D (특화 경관지구, 일반시가지 경관지구)	용도	허용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5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4 중 특화경관지구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※ 각 해당되는 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
			불허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및 「진주시 도시계획조례」 제35조·제36조에 따름 ※ 각 해당되는 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
			권장	블록단위개발시 1,2층은 상가, 3층 이상은 주거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20m 이하(특화경관지구) 33m 이하(일반시가지경관지구)	
		건축선	도로와 접하는 면이 어느 한면이라도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할 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법적해당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1m 상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함(나루터길, 탕자나무길 인접필지 적용제외)	

경 남 공 보

제2509호

2021. 7. 22.(목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
P	주차장 (도시계획 시설)	용도	허용	노외주차장
			불허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사용은 금함
		건폐율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80% 이하	
		용적률	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400% 이하	
		높이	5층 이하	
Q	공동이용 시설	용도	허용	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불허용도 제외) 노유자시설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)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제5호라목)
			불허	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·안마시술소·안마원·욕외에 철담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230% 이하	
		높이	33m 이하(일반시가지경관지구)	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)

○ 가로에 관한 계획

구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고	
보존 가로	기정	나루터길 - 폭원 : 1~5m - 시점 : 76-7번지 - 종점 : 17-10번지 탱자나무길 - 폭원 : 1~2m - 시점 : 18-27번지 - 종점 : 108번지	각각의 길의 형태는 동일한 재료 및 패턴으로 포장하여 일체성이 느껴지도록 구성 나루터길과 탱자나무길의 도로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되, 담장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외벽면으로 대체함 담장의 재질, 형태,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권장 보존가로에 접한 외벽면은 담장과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	담장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따름
	변경	나루터길 - 폭원 : 1~5m - 시점 : 76-7번지 - 종점 : 18-22번지 탱자나무길 - 폭원 : 1~2m - 시점 : 18-27번지 - 종점 : 108번지		
공공 보행 통로	기정	시점 : 중로1-3호선 종점 : 소로3-2호선	주차장④, 공공공지㉠ 우측에 폭원3~4m로 공공보행통로 설치 중로1-154 우측에 폭원3~4m로 공공보행통로 설치	
	변경			
보행 출입구	블록단위개발시	보행출입구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고 내부동선을 폭원 2m이상으로 연결할 것 내부동선 선형자율	단, 블록단위개발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출입구 위치는 순환가로체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함	